

뉴욕주 소외계층 기준 초안

기후 변화가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주 전체 지역사회에 따라 기존의 부담, 취약성 및 스트레스 요인을 악화시키는 위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의 국가 주도적인 기후 리더십 및 커뮤니티 보호법(기후법)은 기후법 및 기타 주 주도적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외된 지역사회(DAC)를 식별하고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의 투자로 인한 혜택 중 35%(목표: 40%)는 DAC에 제공해야 하며, 주정부 기관은 의사 결정 시 DAC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뉴욕의 기후정의 실무그룹(CJWG)은 주 전역의 주정부 기관과 환경 정의 단체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DAC를 식별하고 이러한 지역사회가 주정부의 더 깨끗하고,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역사적인 전환, 감소된 오염과 더 깨끗한 공기 및 경제적 기회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사회는 어떻게 식별되었습니까?

CJWG는 45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뉴욕의 35%를 DAC로 식별했습니다. 표 1은 주의 각 지역에서 DAC로 식별된 인구조사 지역¹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기준(표 2, 표 3)에는 지역사회 내 환경 부담 또는 기후 변화 위험이나 기후 변화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특성 및 건강 취약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포함됩니다.

지역은 뉴욕 주의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 지역과 일치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각 지역 내의 카운티 목록은 regionalcouncils.ny.gov를 참조하십시오.

표 1. DAC를 지정한 각 지역 내 인구 조사 표준지의 백분율

지역	DAC로 식별된 지역 내 표준지 비율
New York City	44%
Long Island	14%
Mid-Hudson	42%
Western NY	34%
Finger Lakes	35%
Capital Region	21%
Central NY	35%
Southern Tier	22%
Mohawk Valley	26%
North Country	14%
모든 전역	35%

표 2. 환경 부담과 기후 변화 위험: 지표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로 유발되는 위험		
역사적 차별 또는 투자 중단과 관련된 토지 사용 및 시설	잠재적인 기후 변화 위험	잠재적인 오염 노출
복원 현장과의 근접성	극한의 더위 예상	차량 교통량 디젤 트럭 및 버스 교통
규제된 관리 계획 현장과의 근접성	해안 및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홍수(예상)	미세먼지(PM2.5)
주요 석유 저장 시설과의 근접성	내륙 지역의 홍수(예상)	벤젠 농도
발전 시설과의 근접성	낮은 식생 피복	폐수 배출
활성 매립지와의 근접성	농경지	
일반 폐기물 연소 시설과의 근접성	병원 또는 긴급/중환자 치료소까지의 차량 이동 시간	
고철 가공 시설과의 근접성		
산업/제조/광업 토지 이용		
주택 공실률		

¹ 지역은 뉴욕 주의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 지역과 일치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각 지역 내의 카운티 목록은 regionalcouncils.ny.gov를 참조하십시오.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NYSER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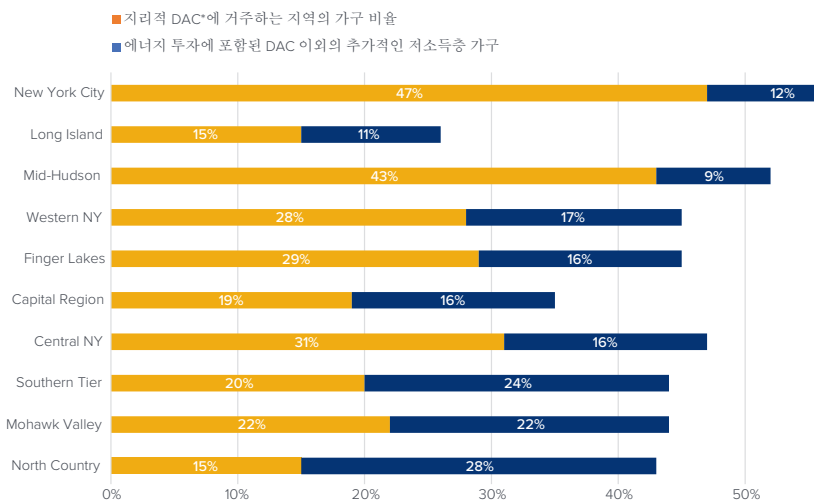
각 인구 표준지는 상대적인 부담, 위험, 취약성 또는 민감도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구체적으로, 각 인구조사 표준 지역에 대한 지표의 백분위 순위는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상대적 수준인 '환경 부담 및 기후 변화 위험' 및 '인구 특성 및 건강 취약성'을 측정하는 값을 산출합니다. (a) 주 전역의 다른 표준 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은 표준 지역 또는 (b) 해당 지역(뉴욕시 또는 나머지 주)은 DAC로 식별되었습니다.

이 합산 점수에 근거하여,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상위 35%는 DAC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지정한 보호 구역이거나 주 공인 국가 소유 토지가 포함된 19개 지역은 이러한 지표의 백분위 순위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DAC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어떻게 DAC 기준의 일부로 간주됩니까?

위에서 논의한 지리적 DAC 기준 외에도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투자를 위한 회계 목적상 연간 소득이 주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거나 저소득층 프로그램(즉,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기타 범주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구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구는 주의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으며, 지리적 지표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오로지 주의 에너지 가격 적정성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 지역의 빈곤을 포착하기 위해 이러한 가구를 포함합니다.

그림 1: 지역별로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투자 회계 처리를 목적으로 DAC 기준에 포함된 가구 수 증가 자료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를 추적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된 가구의 추정 비율

*SMI 60%에 대한 대응으로 200% FPL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수치는 약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표 3. 인구 특성 및 건강 취약성: 지표

인구 특성 및 건강 취약성

소득

지역 중위 소득 비율 80% 미만

연방 빈곤선 비율 100% 미만

학사 학위 미소지자 비율

실업률

한부모 가구 비율

인종 및 민족

라틴계 또는 히스패닉 비율

흑인 또는 아프리카 아메리칸 비율

동양인 비율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토착민 비율

영어 능력 부족

과거 레드라이닝 점수

건강 검진 결과 및 민감도

천식 응급실 방문

COPD 응급실 방문

심장마비(MI) 입원

조기 사망

저체중아

건강 보험 미가입자 비율

장애인 비율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주거 이동 및 통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비율

주거비 부담(임대료)

에너지 빈곤/비용 부담

조립식 주택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인터넷 미가입자 비율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NYSERDA

자세히 알아보기
climate.ny.gov